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시민의견
창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9 월 23 일

여 수 시 장

서 매각



여수시 조례 제2303호

붙임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창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속 상임위원회
2.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팀

제5조제4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

행 사 명			
목 적			
일시/장소		참석인원	
기대효과			
소요예산			
☐ 추진 계획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의원 : (인)

여수시의회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생략)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소속 상임위원회 2.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소요 경비는 의원 1인당 연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④ ----- ----- ----- ----- -----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